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45
----------	------

발의연월일 : 2017. 2. 6.

발의자 : 김병욱 · 임종성 · 정성호

윤호중 · 이찬열 · 윤후덕

전혜숙 · 안규백 · 전재수

소병훈 · 강훈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따라서 법안의 조문 및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용어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비교육적이어선 안 될 것. 하지만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이에 비교육적이며 다소 강제성을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법률 제 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용계획의”를 “배치계획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6. 특수교육기관 <u>수용계획의</u> 수립</p> <p>7. ~ 12.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배치계획의</u> ----- --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